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억압과 鄕約의 변용*

- 益山鄕約을 사례로 -

장순순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목 차 -

- I. 머리말
- II.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정책과 전북지역 향약
- III. 익산향약의 조직과 시행
- IV. 향약 운영을 통한 식민권력의 통제와 억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억압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한 단서로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조선의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어떻게 활용 내지 변용시켰으며, 운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34년 9월, 전라북도 당국은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전 郡에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도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1935년 1월 익산향교에서 익산향약이 조직되었다. 익산향약의 절목에는 전통적인 향약 절목에 더하여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産業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 2018S1A6A3A01045347).

獎勵·公共奉仕·生活改善이 추가되었다.

익산향약의 임원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편입된 사람들이 다수를 점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익산향약은 유교단체로서의 성격보다 전시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신무장의 강화 및 후방의 안정, 그리고 황국신민화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운영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향약은 宥의 영향력 아래에서 향약 본래의 전통적인 정신과 자율성을 배제당한 채 왜곡 변용되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향약, 익산향교, 익산향약, 농촌진흥운동, 조선총독부

I. 머리말

일제는 식민지 지배라는 목적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 근대를 이식하려 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위해 근대가 아닌 봉건적, 전통적인 요소의 적극 활용도 주저하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근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도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생뚱맞게 전통 윤리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주장이 식민지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효과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봉건 내지 전통과 결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던 것이 일제가 내세운 근대였다. 한편으로는 근대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봉건 遺制를 부활시키려고 한 것이 일제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일제강점기의 근대, 곧 식민지 근대는 근대와 전통이 묘하게 뒤섞인 일그러진 근대였고,¹⁾ 그런 만큼 일제로서는 필요하다면 非근대적 또는 反근대적 요소를 식민지 지배에 결합시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향약은 양반들의 향촌지배를 위한 공적기구이자 지방의 자치규약을 의미한다. 양반들의 향촌질서 유지, 즉 향촌 자치와 이를 통한 평민이나 노비들의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식민지' 조선의 삶과 근대』, 역사비평사, 2014.07, 27~28쪽.

는 향촌사회에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을 당했을 때 향약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측면이 존재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역사회에서 지방 양반 사족의 영향력 약화와 수령권의 강화로 향약은 수령권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화된 측면이 있었다.²⁾ 한국을 침탈한 일제는 조선 민중의 풍속 관습에 깊이 배어 있는 유교적 전통에 주목하여 식민지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지역 유림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수단 중 하나로 전통적인 향약의 부활을 꾀했다.

일제강점기 향약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다. 주로 관북향약에 주목하여 일제의 지방 조선인에 대한 사상정화공작, 농촌진흥운동 등의 전개와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鄕約事業補助事業*」과 「*地方改良補助關係*」와 같은 조선총독부 문서의 분석을 통해 일제의 향약 운용 및 향약 정책을 연구한 논문도 발표되는 등 일제강점기 향약 연구가 다양하고 폭넓게 시도되고 있다.³⁾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향약은 여전히 다양한 사료 발굴을 통해 보다 세밀한 연구가

-
- 2) 장순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과 關北鄕約」, 『현대유림철학연구』 54, 한국하이데거학회, 2019.07, 72-73쪽.
- 3) 일제강점기 향약에 대한 연구로는 신정희, 「日帝下 鄕約을 통한 地方統治에 관한 小考」,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12;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03.05; 이준식,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과 일제의 농촌통제정책: 함경북도의 관북향약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2006.12; 靑野正明, 「植民地期 朝鮮における農村再編成運動の位置付け-農村振興運動を中心に」, 『朝鮮學報』 136, 1990.07; 水野直樹, 「咸鏡北道における思想淨化工作と鄕約・自衛團」,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思文閣出版, 2013.06;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김민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기구 연구」, 『역사문제연구』 20호, 2008.10; 한미라,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11;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와 향약정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02;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08; 한미라, 「1930년대 향약 단체 운영과 단체장의 성향」, 『역사민속학』 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06; 한미라, 「1930년대 전라남도 향약의 운영 양상과 성격 변화-「鄕約事業補助事業」과 「地方改良補助關係」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12; 장순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과 關北鄕約」, 『현대유림철학연구』 54, 한국하이데거학회, 2019.07 등이 있다.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해 가한 억압과 통제의 양태를 향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침략을 근대의 이식으로 정당화하려 한 일제가 정작 근대로 접어들면서 소멸하고 있던 조선의 봉건 遺制인 향약에 주목하고 총독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그 부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향약의 실제 운영 등을 볼 수 있는 사료 발굴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시스템 안에서 향약을 어떻게 활용했으며, 또한 식민권력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상이 잘 드러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에 거의 소개된 바 없는 익산향교⁴⁾의 『益山文廟 鄉約關係書類』⁵⁾를 중심으로 식민권력의 총아인 총독부가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어떻게 활용 내지 변용시켰으며, 그것을 통한 식민지 조선인의 통제·억압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전통에 대한 왜곡 및 파괴의 실상도 밝혀보고자 한다.

4) 익산향교에 대해서는 권익산, 「日帝強占期の 益山鄕校 研究」, 『靑藍史學』 13, 청람사학회, 2006.01 참조.

5) 『益山文廟 鄉約關係書類』는 일제강점기에 익산향교에서 생산한 문서철이다. 수록 범위는 1935년 1월~1945년 4월이다. 「益山郡 益山文廟 鄉約規則」, 「鄉約事務取扱二關スル件」을 비롯하여 제1회부터 제19회에 이르는 향약총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일제강점기 향약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일제강점기 익산향교에서 생산된 자료는 현재 27종의 문서철, 514건의 문서가 남아 있다. 익산향교 자료는 문서철의 수뿐만 아니라 문서 성격의 다양성, 특히 중앙의 경학원(조선총독부)과 지방 향교 간에 주고받은 왕복문서철이 원본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일제의 유립 및 향약을 통한 식민통치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익산향교 생산 문서의 세부목록은 장순순 외 편,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 도서출판 선인, 2020.12에 소개되어 있다.

II.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정책과 전북지역 향약

일제는 1919년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뒤 조선 사회를 식민지 질서로 재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무단적·강압적 지배의 한계를 경험한 일제는 농촌사회의 재편과 식민지 행정을 지방사회에 침투시키기 위해 지방제도를 정비 강화하는 한편 면 아래 동리 혹은 촌락을 단위로 소위 지방개량사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지방개량’, 혹은 ‘건전한 사회 기풍 개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적 일원으로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는 지역사회를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재편하려는 것이었다.⁶⁾ 이 과정에서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전통문화인 향약에 주목하고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⁷⁾

1923년 조선총독부는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의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 郷約の一斑』을 발행했다.⁸⁾ 이 자료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도한 향약 단체의 조사나 향약장려보조사업 시행 때 참고 자료로 전국에 배포 활용되었으며,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향약 관련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인용·참고되거나 요약되어 실렸다.

도미나가는 1916년 조선총독부 試補로 조선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여 이후 지방 사무관, 총독부 사무관으로 내무국에서 지방과 관련된 일에 재직하면서 지방에서 시행된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인의 파악과 조선의 지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약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⁹⁾ 그는 3.1운동 이후 ‘혼란스러운’ 조선을 안정

6) 김영희, 앞의 책, 2003, 364~365쪽.

7)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조사에 대해서는 한미라, 앞의 논문, 2016.02; 장순순, 앞의 논문, 2019.07 참조.

8) 도미나가 후미카즈는 1918년 조선총독부 도사무관에 임명되어 황해도에서 근무했으며, 같은 해 총독부 사무관이 되었다. 1919년~1923년에는 총독부 감찰관을 겸했으며, 1925년에 전라북도 경찰부장이 되었다. 1926년 총독부 경무국 보안과장, 1929년에는 내무국 지방과장, 1931년 함경북도 지사, 1934년 경기도 지사, 1936년 학무국장을 지냈다. 이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장을 지냈다. 그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제1과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1921년 조선총독부 발행 월간잡지인 『朝鮮』에 5월, 9월, 10월 세 번에 걸쳐 연재했는데 이 글들을 정리하여 1923년에 발행했다(한미라, 앞의 논문, 2016.02, 9~10쪽).

9) 富永文一,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 郷約の一斑(一)」, 『朝鮮』 76, 조선총독부, 1921년.

시키고 조선인의 사상을 일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향약에서 찾았다. 지방의 민풍을 개선하고 民力을 함양하는 것은 국가 법제의 힘보다 지방민 스스로가 분발해서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향약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향약을 옛 모습, 즉 전통적인 ‘조선 향약’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향약을 부활시키되 식민당국의 입장에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⁰⁾ 이러한 인식은 1932년 함경북도 지사로 재직하면서 그가 만든 關北鄉約에 잘 반영되었다.

더욱이 1929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은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어 일본의 자본주의 구조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던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산미증식계획으로 미곡단작구조가 심화된 상태에서 쌀값의 폭락은 중소지주를 포함하여 농가 전반을 결정적으로 위협했다.¹¹⁾ 전국에서 소작쟁의가 격화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적 농민 조합 운동’의 광범위한 전개 및 1931년 만주사변에 따른 전시체제의 위기에 직면한 총독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농촌진흥운동이었다.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1940년까지 진행된 官制 농촌운동으로, 물질생활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신생활의 안정이 중시되었다. 농촌의 피폐와 생활의 어려움이 일본 경제정책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농민 자신의 사치와 나태함에 있다고 세뇌시키며, 自力更生의식을 고취시켰다. 色服 착용, 미신 타파 등의 생활 개량을 장려하면서 근면과 절약, 저축, 금주, 금연, 부업 장려 등의 생활 태도가 적극 권장되었다.¹²⁾

1931년 6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농촌에서의 혁명 운동을 진압하고 농촌사회를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았다. 이에 內鮮融和를 크게 진척시키고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막고 민중을 안정시켜 체제내화하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

49~50쪽.

10) 富永文一,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 郷約の一斑(三)」, 『朝鮮』 79, 조선총독부, 1921년, 90쪽.

11) 김영희, 앞의 책, 2003, 60쪽.

12)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 농촌진흥운동(<http://contents.history.go.kr>, 2022.10.25. 검색)

위¹³⁾ 전국 각 지역에 향약을 보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로써 1932년에는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향약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듬해인 1933년에는 향약사업장려 보조금 정책이 실시되었다.

1932년 4월 학무국 사회과는 각 도에 향약 단체의 실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면서 「栗谷先生と郷約」, 「郷約の一斑」을 참고용으로 전국에 배포했다. 당시 총독부는 전통적인 향약의 4대 강목인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정신은 오래도록 조선의 지방 민심을 지배해 왔으며, 風敎의 개선, 隣保相助 등 教民上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들어 향약을 부흥시켜 지방통치에 활용하게 되면 사회 교화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¹⁴⁾ 이는 향약을 통한 지방 통제정책의 활용을 위한 기본 조사였으며 1933년 향약사업 장려 보조금 정책의 기반이 되었다.¹⁵⁾

조사 결과 1932년에 보고된 전국의 향약 단체 수는 2,570개였으며, 그 가운데 甲은 2,239개, 乙은 315개, 丙은 26개였다. 전라북도에서는 갑 1개, 병 1개로 2개의 향약이 보고되었다.¹⁶⁾ 갑은 전라북도 금산군 금산면 신대리에 소재한 新垔里郷約이었다. 신대리향약은 신대리 區長이 향약장이었으며, 시행상의 규약은 생활개선, 産業改善, 勤儉貯蓄, 衛生觀念 고취, 교육장려, 부업장려, 種子選擇, 肥培耕耘이었으며, 당시 상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종래 향약이 최근까지 실시되다가 없어진 경우인 병에는 남원군 남원읍 三亭里의 남원향

13)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學』 87, 대구사학회, 2007.05, 9쪽.

14) 「郷約二關する調査の件」,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824-829쪽.

15) 한미라, 앞의 논문, 2016.02, 34쪽.

16) 당시 학무국은 향약의 종류를 갑, 을, 병으로 나누었으며 함께 보고할 내용도 첨부했다. 甲은 과거부터 향약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거나 명칭과 상관없이 향약 정신에 입각한 시설이며, 명칭, 소재지, 연혁, 시행상의 규약, 가입자의 자격 및 중심인물, 성적,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乙은 향약을 개선하거나 향약 정신을 가미한 시설로 갑의 보고 내용 가운데 현재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丙은 구래의 향약이 최근까지 행해지다가 없어진 경우로, 향약이 소재하고 있었던 지명, 기왕의 상황, 없어지게 된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약이 보고되었다. 남원향약은 옛날부터 유림이 중심이 되어 상당히 대규모로 향약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당시로부터 27, 8년 전에 관찰사 등이 중심이 되어 향약의 재실행을 시도했으나 3년 만에 점차 쇠퇴했다고 했다.¹⁷⁾

1933년 총독부 학무국은 130개 단체에 총 13,000원의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각도별 인구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향약 단체 수를 배분·조정했다. 경기도는 12개, 충북 7개, 충남 9개, 전북 9개, 전남 12개, 경북 112개, 경남 12개, 황해도 13개, 평남 9개, 평북 10개, 강원도 9개, 함남 9개, 함북 7개 등 총 130개를 배정했다.¹⁸⁾ 그리고 각 도에서 향약 단체를 선정할 때 참고사항과 신청 단체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첨부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종래부터 존재했던 것에 기초하여 공고한 업적을 거두고 우수한 중심인물이 있는 단체 ○○개를 선정할 것(종래부터 존재해 온 것이 개수를 채우지 못할 때는 우수한 중심인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새로 설치하여 이에 더해도 무방함).

둘째, 신설할 경우는 별도로 송부하는 「조선의 향약」²⁰⁾을 참조할 것.

셋째, 신설하는 것은 물론 종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約束 4조목 외에 生活改善·生産獎勵의 2조목을 더할 것(세목을 규정할 필요

17) 『郷約調』(1932.04),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814-823쪽.

18) 『郷約事業獎勵補助二関する件』,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812쪽.

전라북도의 경우, 1932년 조사 당시에는 2개만 보고되었으나 1933년 보조금 지급 대상 향약 단체 수를 배분·조정할 당시는 9개가 배정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5개 단체를 신청했다. 보고 당시에 비해 신청 숫자가 증가한 것은 학무국의 보조금 배정 직전에 전라북도에서 다수의 향약 단체가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 『郷約事業獎勵補助二関する件』,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807-808쪽

20) 『朝鮮の郷約』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서 1933년에 발간한 『社會教化資料』 제1집으로, 富永文一의 「郷約一斑」과 高橋亨의 「栗谷先生と郷約」으로 구성되었다(한미라, 앞의 논문, 2016.02, 36쪽 주 126) 참조).

가 있을 경우는 별도 세칙을 세울 것,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목이 있을 때는 다시 1~2개를 더해도 무방함).

넷째, 役員은 종래의 명칭을 사용해도 都約長(約長)은 約員 중에서 선거하여 부윤·군수·島司의 인가를 거쳐 취임하는 형태로 할 것.

다섯째, 이상은 規約·약장의 성명 및 약력, 役名別 인원, 유지방법, 1년의 경비 및 용도, 기타 참고할 사항을 갖추어 보고할 것.

여섯째, 보조금은 1개소에 대해 100원 내외로 할 것.

위의 내용은 우가키 총독의 시국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조선총독부가 장려·권장한 향약은 식민권력의 철저한 통제 안에서 체제에 순응하는 조선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본래 조선총독부는 향약 보조금 지원 단체로 전라북도에 9개를 배정했으나 도에서는 옥구군의 聖山面의 성산면향약과 玉山面의 玉山面堂北里鄉約, 고창군의 고창면 고창향약, 흥덕면 흥성(흥덕)향약, 무장면 茂長鄉約 등 5개 단체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옥구군 소재 두 개의 향약은 기존에 설행된 것이었고, 나머지 3개는 신설된 것이었다.²¹⁾ 그러나 학무국의 최종 선정에서는 이미 설행된 두 개의 향약은 빠졌고 새로 신설된 3개가 선정되었다.²²⁾

옥구군의 聖山面의 성산면향약과 玉山面의 당북리향약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은 이들 향약이 이미 총독부의 향약정책과 같은 방향성에서 충실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약보조금 지급 요청 당시 전라북도 지사가 학무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성산면향약은 1927년 7월 16일 창립총회에서 규약이 통과되었으며 임원 선거 등을 거쳐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약장은 당

21) 「郷約事業獎勵補助二關する件」,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1002~1003쪽.

22) 「郷約事業獎勵補助二關する件」, 『郷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772~781쪽에는 전라남도의 광주군 지산면 光藍契,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大興會가 전라북도의 향약단체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록이다. 광람계와 대흥회는 1933년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향약장려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학무국에 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였다(1030~1039쪽).

시 성산면장 黃廷奎로, 그는 학교 교육에 종사했으며, 郡屬, 道評議會員 직을 거친 인물이었다. 성산면향약은 옥구군 군수 김정기의 論告에 따라 면장 황정규와 성산면 유생의 중심인물인 姜泰述 등이 중심이 설립되었으며, 生活改善, 産業振興, 교육 및 근로생활, 義務實行, 賞善懲惡, 過失相規의 6대 강목과 세목을 정하여 실행했다. 운영 경비 마련은 물론 매년 1월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²³⁾

당북리향약은 1931년 3월에 조직되었다. 보고 당시 약장은 한문 수업 경력이 있으며 區長을 역임한 崔斗鉉이었다. 당북리향약은 “本邦 道德을 重히 하여 相扶相助로 恒産과 産業을 圖함과 供히”하며, 생활개선, 산업진흥, 교육 및 근로생활, 義務實行, 當善罰惡, 過失相規를 실행했다. 창립 당시부터 약원 57명이 매월 1인당 10錢씩 저축하여 운영비를 조달했으며, 당시 3백 원의 저축이 있을 정도로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²⁴⁾

한편, 향약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고창군의 세 향약은 총독부의 향약보조금 지원에 앞서 신설된 향약이었다. 고창면 고창향약은 1933년 3월에 16일에 고창향교 명륜당에서 창립총회를 거행했다.²⁵⁾ 약원은 옛 고창군 내에 거주하는 유림들로 조직되었으며 風教德化를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도약장에는 柳春錫, 부약장에는 李公雨, 金進鉉,²⁶⁾ 유사에는 劉載淵,²⁷⁾ 金在冕, 柳春善, 고문에는 고창군수 趙春元, 고창면장 柳化鍾, 고창군 教化主事 邊日燮, 고등보통학교 教諭 宋

23) 『매일신보』 1927.09.29., 「沃溝郡에 鄉約組織 郡守面長等이」; 「鄉約事業獎勵補助二關する件」, 『鄉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1008-1011쪽.

24) 「鄉約事業獎勵補助二關する件」, 『鄉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1012-1017쪽.

25) 「鄉約事業獎勵補助二關する件」, 『鄉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1018-1021.

26) 김진현은 1925년~1932년에 고창군 古水面長을 지냈다(국사편찬위원회, 직원록).

27) 劉載淵은 1882년 6월 10일생으로, 고창군 大雅面 月山里에 거주했으며.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대제학을 지낸 劉敞의 18세손이자 16세기 후반 무장현감을 지낸 劉漢良의 14세손이며, 통정대부 劉聖迪의 증손, 劉相基의 손으로 나와 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 근현대 인물 자료).

泰會, 고창향교 直員 趙冕承 등 5명이 임명되었다.

흥덕면 흥성향약 또한 1933년 3월에 조직되었다.²⁸⁾ 옛 흥덕군내에 거주하는 유림들로 조직되었으며, 목적은 고창향약과 동일하다. 임원의 구성은 도약장에는 대한제국 궁내부주사를 역임한 高舜鎭, 부약장에는 白南璇, 유사에는 金衡中, 李璿九, 李潤煥이 임명되었으며, 고문에는 고창군수 조춘원, 고창군 교화주사 변일섭, 유림 李綱洙, 高泓鎭, 李昇交, 약정에는 각 면의 인물 1인씩이 선발되었다.

1933년 3월 옛 무장군내에 거주하는 유림들로 조직된 무장향약도 風教德化를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도약장은 대한제국기에 승지였던 閔泳直, 부약장에는 鄭休暢, 5명의 고문은 고창군수 조춘원, 고창군 교화주사 변일섭, 무장면장 陳宇坤, 무장공립보통학교장 秋吉保記, 무장경찰관주재소 垣山源次 등이었다.²⁹⁾

위 세 향약은 조직 시기나 임원의 구성, 규약 내용, 운영 경비의 조달, 고문에 고창군수와 군교화주사의 참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1933년 3월에 조직되었으며, 약원은 지역 관할 내에 거주하는 유림들로 이루어졌고, 풍교덕화를 베푸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실행 조목도 신설 향약에 실행사항으로 '約束 4조목 외에 生活改善·生産獎勵의 2조목을 더할 것'이라고 한 총독부의 요구 조건에 온전히 부합하였다. 향약 임원으로 관할 지역의 군수, 면장, 군교화주사, 고등보통학교 교장, 교사 등 지역의 유력 관료가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규약에 고문은 중요한 約務에 참여하며 約長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들 향약의 운영에 관의 적극적 개입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다.

28) 鄉約事業獎勵補助ニ関する件, 『鄉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IA0004801, 1933, 1022~1025쪽.

29) 鄉約事業獎勵補助ニ関する件, 『鄉約事業補助書類』,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국가기록원 CIA0004801, 1933, 1026~1029쪽.

Ⅲ. 익산향약의 조직과 시행

1. 익산향약의 조직

총독부는 1932년부터 조선농촌사회의 안정화를 목표로 농촌진흥운동 등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화조직체인矯風會, 진흥회, 鄉約 등을 이용하고자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국에 소재한 향약 단체의 조사 및 향약보조금 지급 정책이 시행되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이다.

이러한 총독부의 향약 정책은 전라북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다음 인용문에서

全北當道局에서는 農村振興運動에 道內儒林團을 總動員하여 從來舊慣을 固守하여 時代推移에 沒交渉이던 그들로 하여금 更生活動의 機會를 주자는 方針下에 文廟를 中心으로 鄉約을 組織케하여 鄉黨의 美風良俗을 維持助長하고 産業經濟의 向上發達을 勸獎함과 同時에 公民으로서의 奉仕的 精神涵養에 努力하여 物心兩方面의 刷新更生을 圖하리라는 바 全道 各文廟의 鄉約發會式은 十月中에 全部終了되도록 各郡에 通牒을 發하였다는 바 高敞, 鎭安, 全州, 沃溝의 四郡에는 임의 鄉約을 組織하여 爾來地方教化上 相當한 效果를 擧揚하였다하며 道文廟關係者인 儒林總會는 約九千名에 達한다는데 鄉約에 의한 儒林의 覺醒活動을 見할 時는 農村振興上 莫大한 好影響을 齎來하리라 하여 當局으로도 多大한 企待를 가지고 此에 着手하였을 뿐아니라 儒林도 理解共鳴하여 當국에 대하여 感謝不已한다고 함.³⁰⁾

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라북도 당국은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도가 주체가 되어 각 군에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30) 『매일신보』 1934.09.24, 「全北道內儒林團 鄉約發會式舉行 十月中으로 各郡이 全部發會 振興運動效果偉大」.

전라북도도는 도내 각 향교 소속 유림이 9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을 총동원하여 농촌진흥운동에 참여하게 한다면 식민통치상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래서 유림을 총동원하기 위해 1934년 9월에는 전라북도 내 각 향교를 중심으로 향약을 조직하라는 통첩을 내렸다. 지방민들의 ‘미풍양속’을 유지·조장함으로써 산업경제의 향상 발전을 꾀하며, ‘공민으로서의 봉사적 정신함양’에 노력할 것을 도모하며, 이미 조직된 고창, 진안, 전주, 옥구 지역 외에 다른 향교에서도 향약을 조직하여 10월 중에는 발회식을 마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에서는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익산향교³¹⁾에서도 1935년 1월에 향약이 조직되었다.³²⁾ 「益山郡益山文廟鄉約規則」은 ‘益山郡鄉約規則’과 ‘附 實行細目, 儀禮準則’으로 이루어졌다. ‘익산군향약규칙’은 총 1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약의 임원조직과 운영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여타 향약의 ‘범례’에서 언급되는 임원의 선출과 자격 임기 등 기타 운영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제1조 本約은 익산군 익산문묘 향약이라 칭함.

제2조 본약은 익산문묘 區內에 거주하는 유림으로써 조직함.

제3조 본약은 鄉黨의 美風良俗을 유지조장하며 産業經濟의 향상발달을 장려함과 동시에 公民으로써 봉사적 정신의 함양에 노력함으로써 목적함.

제4조 본약소는 익산문묘 명륜당 내에 둠.

제5조 본약에 다음의 역원을 둠. 約長 1인, 副約長 2인, 有司 約간인, 約正 各邑面 1인

31) 益山郡은 조선시대 군현제도의 정비과정에서 1413년(태종 13) 익산군으로 명칭이 확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14년에는 府·郡 통폐합으로 礪山, 咸悅, 龍安을 편입하여 익산군이 되었다. 1931년 읍·면제의 실시에 따라 익산면이 익산읍으로 되었다가 곧 이리읍으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인 1947년 4월 이리읍이 이리부로 승격됨에 따라 익산군에서 분리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이리시로 개칭되었다. 이리시의 성장으로 이리시와 익산군으로 나뉘었다가 1995년 도농복합도시설치에 따라 이리시와 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2) (益鄉第10號)「鄉約臺帳製作二閱スル件」(1940.08.15.), 『鄉約關係書類』(益山文廟).

- 제6조 약장은 약원을 통솔하며 향약의 사무를 감리함. 부약장은 약장을 보좌하며 약장이 事故가 있을 때는 이를 대리함. 유사는 약장의 명을 받들어 향약사무에 종사함. 약정은 약장의 지휘를 받아 읍면 내의 約務를 분장함.
- 제7조 약장은 소속문묘 직원으로써 이에 충원함. 부약장은 총회에서 선거함. 유사·약정은 약장이 이를 위촉함. 부약장, 유사, 약정의 임기는 2개년으로 함.
- 제8조 본약 정기총회는 매년 춘추 2회 문묘석전일에 향교에서 개최함. 임시총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약장이 군수의 승인을 거쳐 이를 소집함. 役員會는 필요가 있을 때 약장이 이를 소집함.
- 제9조 約員은 다음에 기록한 節目을 준수하여 협동 互相淬礪하여 約中の 美俗을 助長함. 지방의 진흥발전에 공헌키로 約함. 一, 德業相勸, 二, 禮俗相交, 三, 患難相恤, 四, 過失相規, 五, 産業獎勵, 六, 公共奉仕, 七, 生活改善. 실행세목은 총회에 附議하여 실시함.
- 제10조 본약에 고문 약간인을 둬. 고문은 중요 約務에 참여하며 또는 事業進行에 관하여 의견을 말함. 고문은 총회에서 추대함.
- 제11조 본약에 다음의 簿冊을 갖추어 유사가 이를 보관함. 鄉約簿-약원 역원의 氏名 주소 직업을 기록함. 德過簿 - 약원 중 德業顯著한 자 및 過失戒飭을 요하는 자를 기입함. 金穀受拂簿
- 제12조 본약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말일에 끝냄.
- 제13조 사업진행상 필요한 경비는 약원의 齎金, 유지의 의연금 및 보조금 조성금으로써 이를 충당함.
- 제14조 본약 發會 후 본약에 加盟하고자 하는 자는 약원 2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약장에게 出願할 것. 약장이 가뭇을 許할 때는 향약부에 등록함.
- 제15조 약원으로써 郡外에 轉住한 자는 탈퇴한 자로 간주하고 향약부에서 삭제함.
- 제16조 본약 규칙을 改正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기로 함.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익산향약의 정식 명칭은 ‘익산군 익산문묘 향약’이고, 익산향교 명륜당 내에 사무소를 두었다. 향약원은 익산향교 관할 지역 거주 유림들이었으며, 임원으로 약장은 익산향교 直員이 당연직으로 되었다. 부약장 2인, 유사 약간 명과 약정은 익산향교 관할 각 면에 1인씩, 그리고 약간의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익산향교에서 시행되는 석전제가 끝난 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향약의 가입은 약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약장의 허락을 얻어 이루어지며 향약부에 등록되었다.

향약의 구역 범위와 향약원의 구성은 관북향약에서 “향약의 구역은 주로 지방에서의 집단적 부락을 중심으로 하되, 단 반드시 一洞里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향약원은 구역 내에서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 이상자로 할 것”으로 규정한 것과 다르다. 익산향교 관할 지역 즉, 이리읍·금마면·춘포면·왕궁면·팔봉면·오산면·삼기면·북일면에 거주하는 유림들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의 향약’을 토대로 부활시키되 식민당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는 총독부의 향약 정책에 따라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익산향약이 조직된 직후인 1935년 2월 13일, 익산군수는 관할하는 네 개의 향교, 즉 익산향교·여산향교·함열향교·용안향교의 향약장 앞으로 향약사무 취급에 관한 통첩을 보낸다. 문건에는 향약사무의 취급은 각 향약규칙에 따라야 하며, 특히 재무에 관한 豫算帳簿 등은 군에서 제시한 양식에 준하여 봄과 가을 정기총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군에서 작성해 내려 보낸 문서양식의 제목은 ‘何年度何文廟鄉約收入支出豫算’, ‘何年度何文廟鄉約收入支出決算’, ‘何年度現金受拂簿’, ‘何年度收納簿’였다. 또 향약원에 관한 정보인 鄉約簿와 德過簿도 책으로 만들어 제출하도록 명시되었다.³³⁾ 위의 사실을 통해서 익산향약의 운영에는 지역의 최고관료인 익산군수가 깊숙이 개입했으며 다방면에 걸쳐 직접적인 관여와 감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3) (益內第240號)「鄉約事務取扱二関スル件」(1935.02.14.), 『鄉約關係書類』(益山文廟).

2. 익산향약 節目

익산향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인 절목은 향약규칙 제9조에 밝혀져 있다. 향약원들은 德業相勸·禮俗相交·患難相恤·過失相規·産業獎勵·公共奉仕·生活改善의 7개 절목을 “준수하여 상호간에 협동하고 노력하여 향약 중의 아름다운 풍속을 조장하고 지방의 진흥발전에 공헌하기로” 약속할 것을 명시했다. 나아가 각 절목의 실행 세목은 총회에 토의에 부쳐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로 전통적인 향약이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교·환난상휼 4개 절목인데 비하여 익산향약은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산업장려·공공봉사·생활개선 절목이 추가되어 전통적인 ‘조선 향약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또한 1933년 총독부가 향약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설하는 것은 물론 종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 4조목 외에 생활개선·생산장려의 2조목을 더할 것”이며, 구체적인 세칙을 정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추가 조목도 무방하다고 한 총독부의 지시가 충실히 반영되었다.

향약규칙에 첨부되어 있는 ‘益山郡鄉約實行細目’에 의거 익산향약 절목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덕업상권’, ‘환난상휼’, ‘과실상규’ 항목은 ‘조선 향약과 별 차이가 없다. ‘예속상교’는 의례준칙 시행을 강조한 내용이다. ① 20세 이상인 자는 尊者, 이하는 幼者라 하며, 10세 이상인 자는 長者, 이하는 少者라고 함, ② 喪事로 모일 때 음주할 수 없으며, 喪家 또한 술과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멀리서 온 손님은 스스로 점심을 준비해야 하며, 장례식에서도 음주를 불허함, ③ 1934년 11월 10일 官通牒 제 29호에 따른 의례준칙의 실행을 세목으로 했다.

‘산업장려’는 ① 영농은 自作自給, 자력경영을 위주로 하며, 경작은 薄播種子하고 토지는 깊게 갈 것, ② 밭농사는 大小麥, 粟, 大豆, 甘藷, 馬鈴薯, 陸地棉 등의 재배법은 균읍면의 지도를 준수하여 改良을 게을리 말 것, ③ 副業은 養牛, (生飼)養豚, 養鷄, 養蠶, 養蜂, 가마니 짜기, 새끼 꼬기 등을 勸勉力行 하여 잉여 노동력을 충분히 消化할 것, ④ 비료는 퇴비증산, 綠肥栽培, 金肥를 최대한 활용해 비용을 절약할 것,

⑤ 愛林은 활엽수와 새싹의 벌채 금지, 어린나무 保育 등으로 되어 있다.

‘공공봉사’는 ① 租稅公課는 납기 전에 필히 납부함, ② 報恩에 감사하고, 타인과 다수를 위하여 널리 시혜를 베풀며 私利를 꾀하지 않고 共存共榮을 도모함, ③ 도로수선, 교량가설, 堤防維持, 鄉里美化, 전염병 예방, 마약중독방지 등의 일을 솔선 실행함으로 되어 있다. 이는 조세와 공과금 납부 등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국가발전, 지역발전에 솔선하도록 해 농촌진흥운동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개선’은 ① 조혼의 폐해가 대단히 심한 것이 셋으로, 하나는 身命危害, 둘째는 倫理壤亂, 셋은 경제타격 등으로 삼가지 않을 수 없다. ② 미신은 풍수, 巫卜, 祈禱, 淫祀 등은 선현이 경계한 바이다.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 ③ 白衣는 길복이 아니며 옛날이 喪人과 천인이 입었던 옷이다. 속히 色服으로 바뀌 흥함을 피하고 길함을 취할 뿐 아니라 경제의 제1책으로 의복은 흰색을 금해야 한다(단 상중인 자는 제외). ④ 혼인·상례·장례·제례는 집안 형편을 돌보지 않고 겉치레를 과하게 꾸며 필경은 가산을 탕진하게 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함, ⑤ 근검저축은 불시의 재난을 防備하고 또한 후일의 편안한 인생을 얻는 것이니 지금 철저하게 시행해야 함, ⑥ 炊所(부엌), 온돌, 우물, 변소 등의 개선은 우리의 위생보건상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그냥 가벼이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물론 조혼의 폐지나 미신에 대한 경계, 혼인·상례·장례·제례의 과도한 낭비 등은 ‘조선 향약’에서도 근대화 운동이 추진되면서 폐지 또는 배척된 사항이다.³⁴⁾ 그러나 상가나 장례식에서 멀리서 오는 손님에게까지 음식 제공과 술을 금지하는 것이나 흰옷 착용의 금지와 색복 착용, 즉, 백의는 길복이 아니며 색복착용은 흥함을 피하고 길함을 취하는 것이라는 논지는 생활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식민지 조선의 전통에 대한 파괴 및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34) 신정희, 앞의 논문, 1992, 968쪽.

이상으로 볼 때 익산향약은 ‘조선 향약의 4대 절목’을 기초로 두면서 당시 총독부 당국이 추진하고 있던 각종 식민정책, 대표적으로는 농촌진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산업장려, 공공봉사, 생활개선 절목의 세부 세칙은 1933년 초가 되면 총독부가 새롭게 내건 농가갱생이라는 기치를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농촌사회의 불안정이 일제 식민권력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수탈에 있다는 점에는 눈 감은 채 조선 농민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책임을 조선 농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잘살게 된다는 것을 세뇌한 것이었다. 결국 향약 절목은 皇國臣民으로서의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고, 총독부가 추진하고 있던 각종 식민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教化改善이라는 미명 아래 교묘하게 식민지 조선인을 탄압 내지는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³⁵⁾ 그 성격 또한 크게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향약 운영을 통한 식민권력의 식민지 통제와 억압

익산향약의 구성원인 약원은 익산향교 관할 지역 거주 유림들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익산문묘 향약규칙’에 따르면, 임원은 약장 1인, 부약장 2인, 유사 약간 명과 약정, 그리고 약간의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향약의 대표적인 약장은 익산향교 직원이 당연직으로 임명되었으며, 그 업무는 약원을 통솔하며 향약의 사무를 감리했으며 유사와 약장을 위촉하는 것이었다. 부약장은 약장을 보좌하며 약장 유고시에 대리했으며, 향약 총회에서 선거로 선발했다. 약정은 약장의 지휘를 받아 읍면 내의 約務를 분장했으며 익산향교 관할 각 읍면에서 1인씩 임명되었다. 고문은 중요 約務에 참여하거나 사업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총회에서 추대되었다. 부약장, 유사, 약정의 임기는 2년이였다.

35) 신정희, 앞의 논문, 1992, 969쪽.

그렇다면 익산향약의 임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937년 12월 15일에 개최된 제6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21명의 이력과 행적을 추적하여, 그 이력과 행적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1937년 10월 선발된 익산향약 임원

직위	이름	이력 및 행적	비고
약장	蘇鎭德	1935년~1941년 익산향교 직원	
부약장	蘇鎭文	1910년 6월~ 순사 1919년~1936년 익산군 팔봉면장 1942년 향약 총회에서 '국어' 보급 및 유도연구의 실행 방향 설명, 시국에 대한 강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받음
	丁翼燮	1935년 익산군 북일면 면협의회원 당선 1938년 出征軍人戰死者 가족 위문 집행위원	
유사	林鍾萬		
	蘇華永	1935년 익산군 왕궁면 면협의회원 당선 1938년 出征軍人戰死者 가족 위문 집행위원	『매일신보』 「懸賞漢詩」 2회 입상
약정	諸田萬壽男	1892년 일본 도쿄 출생 1921년 7월~ 조선총독부 道屬, 황해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각 지방과 근무 1929년 群山부속 내무부 屬 1932년~조선총독부 군수(김천군수, 전주군수, 郡山府屬) 1937년 익산군 裡里邑長 1939년 대구부 주사	
	蘇祥永	1937년~1939년 익산군 금마면장 1938년 10월 향약총회 색복착용 제안	
	梁在珉	1937년, 1940년 익산군 팔봉면장	부모 회갑 연회를 폐지 대신 50여 원을 팔봉면 덕기리 빈민의 戶稅 대납
	朱鍾洛	1935년 익산군 삼기면 면협의회원 당선 1935년 익산군 삼기면 학교평의원 선출 1937년~ 1940년 익산군 三箕面長	
	丁奎東	1922년 충청북도 충주군 蘇台面長 1924년~ 전라북도 익산군 郡屬 1934년~1940년 익산군 北一面長	
	鄭在彦	1934년 익산군 五山面長	
	宋廷植	1927년~1942년 익산군 王宮面長 1938년 10월 향약총회에서 出征軍人戰死者 가족 위문을 제안, 시국 講話	1927년 이래 면내 13개소의 진흥회 조직, 성적 양호 익산군 왕궁면 興岩里 元馬

		1942년 향약총회에서 시국강연	洞振興會를 주도, 부락갱생운동에 큰 업적
	盧文宰	1921년~1938년 익산군 春浦面長	농가갱생운동 적극 참여(1933년) 춘포면장 취임 15주년 기념으로 춘포면에 1780원 기부
고문	趙仁元	1929년 익산군 금마면 면협의원 당선 1935년 익산군 금마면 면협의원 당선 1935년 익산군 금마면 학교평의원 선출	
	辛得水	1945년 掌議로 향약총회에서 獻納殿 경작, 헌납 제안	
	李秉夏	1935년 팔봉면 면협의원 당선	益山郡 農會 주최 棉作增收 品評會에서 2등상 수상
	宋炳台	1907년~1909년 익산향교 직원 1920년 익산군 郡參事	왕궁면내 빈민의 戶稅 대납 (1930)
	孫樂會		
	楊定熙	1932년~1936년 익산군 三箕面長	
	鄭熙碩	1928년~1932년 익산향교 직원	지방유림의 慕聖會 奉卹團 참여 주도
	李載暻	1924년 춘포면에서 조성된 사립보통학교 기성회 발기인 1935년 익산군 춘포면협의원 당선	

* 국사편찬위원회의 「직원록 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반민특위조사기록」과 『直員掌議名簿』(益山文廟), 『鄉隣關係書類』(益山文廟); 『每日申報』(1926.06.11., 1928.06.01., 1929.12.03., 1930.06.12., 1930.06.15., 1935.07.06., 1935.09.11., 1935.11.22., 1936.02.18., 1936.08.08.), 『朝鮮中央日報(여운형)』(1934.12.27., 1935.06.01., 1935.01.01.), 『東亞日報』(1925.02.06., 1933.06.03., 1934.12.24., 1936.07.04.), 『시대일보』(1935.01.01.)에 기초해 작성했다.

〈표 1〉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먼저, 익산향약 임원에는 익산향교에서 활동하는 유림 가운데 지역 행정기관의 장이거나 면의 자문기관인 면협의원, 면협의회가 선출하고 군수가 임명하는 교육 관련 자문기관인 학교평의원, 학교 기성회 발기인 등 식민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깊숙이 편입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약장을 포함하여 총 21명 가운데 10명, 부약장 2인 중 1인, 약정 8인 중 8명, 고문 8명 중 1인이 읍장 내지 면장의 이력이 있다. 약정은 익산향교 관할 지역인 익산읍, 금마면, 팔봉면, 삼기면, 북일면, 오산면, 왕궁면, 춘포면의 8개 지역의 현직 읍·면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부약장 2인 중 1인, 유사 2인 중 1인, 고문 8인

중 3명이 면협의원이거나 학교평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이었다.

둘째, 이들은 식민권력의 통치 이념에 따라 총독부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앞에서 언급한 행적 외에도 익산향교 직원을 지냈거나 총독부의 관제 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이나 전쟁 협력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1937년 당시 익산향교의 직원은 약장이었던 蘇鎭德 외에 당시 고문이었던 宋炳台와 鄭熙碩은 1907~1909년과 1928~1932년에 익산향교 직원을 지냈다. 더욱이 송병태는 1920년에 익산군 郡參事를 지냈으며, 1930년에는 왕궁면내 빈민의 戶稅를 대납했다. 유사 蘇華永은 중일전쟁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 집행위원을 지냈다.

향교 직원은 군수에 의해 임명되고 지휘 감독을 받았다.³⁶⁾ 문묘의 守直과 향교 庶務를 처리하는 것이 임무였는데, 문묘의 수직은 제수 마련, 祭官 分定 등 석전의 준비와 진행, 향교 시설의 유지 보수 등 전통적으로 鄕校 齋任이 담당하던 일이었다. 여기에서 향교 서무는 일제강점기 변화된 향교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예결산 자문, 향교 보유 토지의 관리 등 향교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군수와 친일유림단체가 보내온 각종 공문서의 수발 등을 포함한다. 공문서 내용은 주로 총독 훈시 등 일제 지배정책을 지역유림에게 전파하고 일제 말기 각종 헌납 강요와 강연회 참가 등 지역유림을 식민지배에 동원하는 일을 의미한다.³⁷⁾

부약장 蘇鎭文은 1942년 향약 총회에서 일본어 보급 및 유도연구의 실행 방향을 설명하고 시국에 대한 강연을 한 인물로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다.

약정 금마면장 蘇祥永은 1938년 10월에 있었던 향약 제8회 정기총회에서 시행사항으로 채택된 색복착용을 제안했다.³⁸⁾ 왕궁면장 宋廷植도 제8회 정기총회에서 중일전쟁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을 제안하고 시국강화를 주도했다. 그는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1927년 이래 면내에

36) 장순순 외 편, 앞의 책, 2020, 86~87쪽.

37) 권익산, 앞의 논문, 2006, 72~73쪽.

38) (益鄕제4號)「鄕約 第八會 定期總會 狀況 報告의 件」(1938.10.18), 『鄕約關係書類』(益山文廟).

13개소의 진흥회를 조직했으며, 익산군 왕궁면 興岩里 元馬洞振興會를 주도하여 부락갱생운동에 큰 업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향약총회에서는 시국강연을 주도했다.

梁在珉은 부모 회갑 연회를 폐지하는 대신 50여원을 팔봉면 덕기리 빈민의 戶稅를 대납했으며, 춘포면장 盧文宰는 농가갱생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춘포면장 취임 15주년 기념으로 춘포면에 1780원을 기부했다. 이러한 행위는 1930년대에 들어 농민들의 강력한 항일운동과 소작쟁의 격화, 경제공황, 만주사변에 따른 전시체제에 위기를 느낀 총독부가 '사회 안정'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조선농촌사회를 재편성하기 위해 주도한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農家經濟更生計劃 속에서 전개된 것으로 식민 당국의 이해와 맞아떨어진 행위였다.

한편, 익산향약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한 차례씩 문묘 석전을 마친 후 익산향교 명륜당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익산향약은 1935년 2월부터 1945년 4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2회씩, 총 20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총회 결과는 익산향교 직원을 통해서 익산군수에게 매년 보고되었다.

1935년 12월 익산군수는 각 향교직원 앞으로 보낸 通牒에서

… 近時의 대세는 예로부터의 善風良俗을 배척하고 社會人倫의 大本을 파괴하려는 경향이 점점 농후함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頑迷하여 時勢에 覺醒치 못하고 舊慣惡習을 墨守하여 世運의 伸展에 順應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이것은 대개 東洋教化를 위하여 憂慮에 어쩔 수 없는 바이므로로 유교의 本意를 闡明하는 동시에 鄉黨의 미풍양속을 維持助長하고 겸하여 産業經濟의 向上發達을 期하고자 하며, 안으로 각 文廟에 오랫동안 방기하여 돌아보지 않은 유교의 良風인 鄉約을 再起시킴은 畢竟 儒林의 身邊을 각성시킴과 나아가서는 廟下 一般民의 木鐸이 되게하고자 함이니 各位는 이 존립의 목적을 각성하여 그 목적달성에 만전의 노력을 하시도록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약총회 상황은 이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개최 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通牒함.

이라고 하여, 총독부가 향약 조직을 권장한 것은 지역 유림을 식민지 통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식민지 조선 민중의 협력을 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익산군에서는 향약총회 개최 후 5일 안에 향약총회 일시, 장소, 약원의 총수, 금회 합의사항, 전회 합의사항 중 실행 완료 사항, 기타 등 6개 사항을 정리하여 군에 보고하도록 했다. 심지어 향약에 참여한 약원에 대해서는 출석한 인원수와 결석한 인원수까지 전체 약원수에 대비하여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³⁹⁾ 지역 유림들의 동향 파악에도 예의 주시했다.

다음은 『益山文廟鄉約關係書類』를 토대로 1935년부터 1945년까지 전개되었던 익산향약의 활동 상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 익산향약 정기총회 보고 사항 및 행사 진행 상황

총회명	합의 사항	전회 합의사항 실적	행사 및 기타사항
춘기향약총회 (1935.03.12.)	-의례준칙 실행 결정		-익산군 서무주임 殷致黃의 의례준칙 실행에 대한 講話 -이리경찰서 보안계 주임 陸武菴의 유교진흥에 대한 강화 -익산군수 대리 서무주임 殷致黃의 절부 林氏표창장과 상품 수여식 거행
추기향약총회 (1935.08.29)	-미풍양속 유지조장, 사회도덕을 함양을 위해 彰善懲惡하기로 결정 -석전제 거행 전 약원이 음주 등 全廢 결의	-의례준칙은 조금씩 실행 중에 있음.	-익산군수의 東洋敎化의 유도 진흥책과 舊慣惡習을 廢하라는 훈화 -익산군 교회주사 金仁洙의 의례준칙의 의의와 사회문물의 향상 발전에 대한 講話
향약제3회정기총회(1936.02.25.)	-의례준칙 실행, 色服착용 실행, 흰옷 착용자 총회 참석 거절 결의 -석전 제관은 지역에서 덕망있고 제례에 익숙한 자로 선발, 70이상으로 老耆자는 제관 불능	-彰善 또는 祭前 음주 全廢 실행됨	-관할 지역민의 선행과 열부, 효열 표창 사실의 보고가 있었음

39) (益內第4607號)「鄉約總會狀況報告方ノ件」(1935.12.19.), 『例規』(益山文廟).

향약제4회정기총회(1936.09.22.)	-이례준칙의 실행 결의	-실행 중에 있음	-익산군수 대리 내무주임의 정 신작흥에 대한 강화 -금마면장의 제안 및 유림에 대한 注意 講話 -선행자, 절행자 추천 보고 및 향약비 收支會計 보고
향약제5회정기총회(1937.04.20.)	-덕업상권, 환난상휼, 예속상규, 생활개선에 대한 약장의 토의	-향약 설립 이래 현저한 성적은 없으나 약원 중에 減員非常이나 기타 약행자가 없는 등 실행의 효과 있음	-선행자 표창식 거행 -향약비 收入紛을 금마우편소에 예금한 사실 보고
향약제6회정기총회(1937.10.17)	-전회 실행 성적의 불량은 합의사항이 너무 광범위한 때문 -간단하고 실행이 용이한 각 공과금은 반드시 지참하여 납부하기로 결정	-성적 불량	-절행자 표창 사실 및 황군위 문금 95인분 64원 90전을 각출 납부한 사실과 향약비 수입 상황 보고, 임원 改選 -군수대리 축탁 吳榮喆의 유교 진흥 강화
향약제7회정기총회(1938.04.15)	-상장례에서 음주 폐품의 교정을 위해 小大期 당일은 친족 외의 조문을 폐지하기로 결정	-공과금 지참 납부 실행 상황 양호	-선행자 표창식 거행 -익산군수 및 군축탁 오영철의 유교진흥과 시국에 대한 훈화 -부약장 蘇鎭文의 신임인사 및 향약 本旨에 대한 講話 -慕聖契金 수지상황 및 문묘 경과보고
향약제8회정기총회(1938.10.15.)	-문맹퇴치에 진력 결정 -익산군내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 가결 -색복차용 실행 결정	-성적 양호	-의장의 경과보고 -군수대리 주사 姜聲瑪가 군수의 석전제의 엄숙 거행 훈화 전달 -금마소학교 교과장, 왕궁면장 宋廷植의 시국강화
향약제9회정기총회(1939.04.15.)	-남녀조혼 弊風 폐지를 위해 儀禮使覽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혼인할 것 -남녀 약혼 때 사주는 의례서식에 따라 신랑 신부의 이름, 생년월시를 적어 반드시 교환할 것	-성적 양호	-議長이 本約에서 작년 11월 1일에 익산군내 출정군인 중 전사자 가족 위문 사실과 모성계금 수지 사항을 보고 -약원 洪淳采 등이 직원의 재임 요청. 직원 李秉元 선발
향약제10회정기총회(1939.10.15.)	-아동교육은 가정교육이 필요. 가정에서 자녀를叱責할 때 惡言과 욕설은 절대 폐지	-성적 양호	-익산군수 대리 卍洪宰씨의 시국인식에 대한 훈화, 부약장 蘇鎭文의 유교진흥에 대한 講話 후 폐회

	-혼인예식이 끝난 후 마을 부인들의 신부 의상 展覽 악습 폐지		
향약제11회정기 총회(1940.04.15.)	-유도진흥을 위해 매일 1회 管内 각 읍면 中堅 靑年을 소집하고 강사를 초대하여 講義하기로 함(왕궁면 약정 常山씨의 제안)	-성적 양호	-익산군수의 신임인사 및 유도진흥에 대한 훈화 후 폐회
향약제12회정기 총회(1940.10.15.)	-전회 합의사항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설비와 경비가 없음에 기인한 것, 계속 연구하여 실행을 기하기로 안건처리 보류함. -집회, 기타 服務시간 엄수	-실행 불능	-금마경찰관 주재소에 근무하는 韓순사의 시국인식에 대한 강화 후 폐회
향약제13회정기 총회(1941.04.15.)	-정오 點鐘을 필히 시행할 것 -국민총력운동에 기초하여 생산확충계획을 철저히 실행하기로 함.	-성적 양호	-익산군 교회주사 孫昌寶의 시국인식 강화와 춘포면 약정의 강화 후 폐회
향약제14회정기 총회(1941.10.15.)	-상호 敬愛의 건 -靑年隊員 후원의 건	-성적 양호	-익산군수대리 주사 林保光의 시국강화, 금마면장, 약정 中津秉寔의 생산확충계획, 물자 통제에 대한 강화 후 폐회
향약제15회정기 총회(1942.04.15.)	-효열 및 篤行者 조사의 건 -皇道儒學 講話의 건	-성적 양호	-이때부터 총회식순이 있음 -궁성요배와 묵도 실시 -役員 改選 -익산군에서 임석한 金玉培의 유도진흥에 대한 강화, 왕궁면장 송정식의 시국강연 -皇國臣民誓詞 제창 후 폐회
향약제16회정기 총회(1942.10.15.)	-국어보급의 건 -유도연구 또는 황군위문 한시모집의 건	-성적 양호	-궁성요배와 묵도 실시 -익산향약 임원 위촉 -군유도회 부회장 蘇鎭文이 국어보급 및 유도연구의 실행방향 상세 설명, 시국에 대한 강연 후 약원 일동 기립 황국신민서사 제창 폐회
향약제17회정기 총회(1943.04.15.)	-貯蓄勵行 및 식량절약의 건 -미곡증산 실행의 건	-국어보급의 건 -익산군유도회에서 국어보급 및 강습회를 본문모 명륜당에	-군에서 임석한 山口 視學의 시국에 대한 강연 -茂山주사의 유림에 대한 警醒의 설명 후 약원 일동 기립

		서 개최, 장기 강습. 약원이 거주하는 각 부락연맹에서 개최하는 국어강습회에 대하여 연맹이사장과 한층 협조하여 실천거행에 노력함. -유도연구 또는 황군 위문한시 모집다수 제출	황국신민서사 제창 폐회
향약제18회 정기 총회(1943.10.15.)	-慕聖思想 보급의 건 -벼공출 勵行的 건	-목표액 달성. 식량 절약을 위해 대용식의 勵行, 1일 2식주의 실행 -먼저 퇴비 증산에 힘써서 다수확에 노력	-공성요배, 묵도 실시 -약원 具宅祖의 모성에 대한 강연 후 약원 일동이 기립 황국신민서사 제창 폐회
향약제19회 정기 총회(1944.10.15.)	-儒林練成의 건 -애국사상보급의 건	-성적 양호	-공성요배, 묵도 실시 -황국신민서사 제창 폐회
향약제20회 정기 총회(1945.04.15.)	-석전제 獻谷畚 二反步의 건 -미곡증산의 건		-공성요배 묵도 -군 교화주사 孫昌寶의 시국인식 講話 -금마경찰관주재소 島嶼순사의 동양문화에 仁義禮智信을 지켜야 한다는 講話 -현곡답 경작 방법은 掌議 李容克, 辛得水가 솔선하여 경작하여 一反步씩 유림과 협력하여 한남, 매년 장의들의 윤회경작 결정 -의장의 모성계금 수지상황보고 후 폐회 -황국신민서사 제창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익산향약의 운영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익산향약은 유림들의 단체라는 성격에 걸맞게 ‘유교적 예절과 풍속의 보급’, ‘유도진흥’, ‘동양문화에 仁義禮智信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講話’ 등 전통적인 ‘조선 향약’의 특징을 포함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을 위해 전개한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의 보조 수단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35년 3월 제1회 향약총회에서 의례준칙 실행의 결정을 합의한 이후 1939년 10월 제10회 총회에 이르기까지 향약총회에서 의례준칙의 실행 결의와 공과금 납부, 문맹, 색복착용 실행 등의 합의 내용 및 점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알리기 위한 講話 및 강연이 이루어졌고, 관할 지역민 중에서 孝·善·節行者에 대한 표창식의 거행 및 보고, 향약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색복착용이나 의례준칙의 시행은 우리 관혼상제의 전통을 사치나 미신, 과도한 낭비라고 치부하고 ‘문맹’과 ‘근대’라는 명목으로 총독부가 제시한 것으로, 권장이 아니라 강제적이었다. 실제로 익산향약에서는 1936년 2월 제3회 총회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은 향약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결의를 했고, 총독부는 이들 정책의 실행 여부를 향교직원→익산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했다.

둘째,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시체제기에 돌입함으로써 총독부는 향약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 했다. 전쟁 수행을 위해 많은 물적·인적 자원 조달이 필요했던 일제는 내선일체를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이 동등한 처지임을 강조하며 식민지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협력을 기대했다. 그리고 일본과 조선은 同祖同根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인에게도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고,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요구하는 황민화정책을 시행했다.

바로 이 무렵부터 익산향약 총회에서도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군위문금의 각출 납부나 익산군내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 가결, 시국인식에 대한 강화 등이 새롭게 합의되고 그것에 대한 실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중일전쟁 직후인 1937년 가을에 개최된 제6회 총회에서 익산향약 유림 95인이 황군 위문금 64원 90전을 각출해 납부했으며, 이듬해인 1938년 봄 총회부터는 익산군 측 인사들에 의한 시국에 대한 훈화가 시작되었다. 같은 해 가을 총회에서는 익산군내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이 가결되었고, 왕궁면장 송정식의 시국강화가 있었다. 1939년 제9회 정기총회에서는 익산군내 출정군인 가운데 전사자 가족을 위문한 사실이 보고되었으며, 제10회 정기총회에서는 익산군수 대시 辛洪宰의 시국인식에 대한 훈화가 있었다.

셋째, 1940년 이후 전쟁이 더욱 격화됨에 따라 익산향약 총회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유림들의 시국에 대한 인식을 점점·강화하여 ‘총력전체제’하의 모범적인 ‘인간형’을 양성하고, 전쟁물자의 확충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었다.⁴⁰⁾ 이로써 유교단체로서의 익산향약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익산향약은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銃後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40년 4월 제11회 정기총회에서는 익산군내 읍면의 중견청년을 소집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청강하기로 결의했으며, 10월에 있었던 제12회 총회에서는 금마경찰관 소속 韓순사의 시국인식에 대한 강화가 있었다. 이듬해인 1941년 4월 제13회 총회에서는 총회 개최에 앞서 정오 默禱를 반드시 시행할 것과 국민총력운동에 기초하여 생산 확충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합의했으며, 총회 후에는 익산군 교화주사 孫昌寶의 시국인식에 대한 강화가, 10월에 있었던 제14회 총회에서는 익산군수 대리 林保光의 시국강화가 있었으며, 금마면장이자 약정 申津秉堯의 생산 확충 계획, 물자통제에 대한 강화가 있었다. 더욱이 1942년 4월 제15회 총회에서는 皇道儒學에 대한 강화가 합의사항이 되었으며, 왕궁면장 송정식의 시국강연이 있었다. 같은 해 10월 제16회 총회에서는 ‘국어’ 즉 일본어 보급과 황군위문 한시 모집이 합의되었다. 1943년 4월 제17회 총회에서는 저축의 독려 및 식량절약, 미곡증산 실행이, 같은 해 10월의 제18회 총회에서는 慕聖思想 보급과 벼공출 독려가 합의되었다. 1944년 10월에 개최된 제19회 총회에서는 儒林練成과 애국사상보급이, 1945년 4월 제20회 정기총회에서는 쌀 증산이 합의되었다.

특히 1941년 4월 제13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정오 묵도를 반드시 시행할 것이 합의되었는데, 묵도와 궁성요배, 그리고 황국신민서사의 제창이 향약 총회의 식순에 포함되어 총회 개최와 폐회에 앞서 행해졌다는 점도 전시체제가 향약 운영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단서이다.⁴¹⁾

40) 일제는 1937년 내선일체론의 등장,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1940년 10월 ‘국민총력운동’을 전개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고 일본의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2001.12, 42-63쪽 참조).

V. 맺음말

이상에서 익산향약을 중심축에 놓고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조선인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향약을 어떻게 활용하고 변용시켰으며, 운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919년 3·1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일제는 식민지 조선 사회를 식민지 질서로 재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욱이 1929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은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어 일본의 자본주의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던 식민지 조선의 농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전국에서 소작쟁의가 격화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광범위한 전개에 따른 농촌사회의 위기, 1931년 만주사변에 따른 전시체제의 위기를 느끼게 된 총독부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의 전통문화인 향약에 주목하고 향약을 식민통치에 활용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932년 학무국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향약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듬해인 1933년에는 향약사업장려 보조금 정책을 실시했다.

전라북도 당국은 1934년 9월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전 郡을 독려했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는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익산향교에서도 1935년 1월 향약이 조직되었다.

익산향약의 정식 명칭은 ‘익산군 익산문묘 향약’이고, 익산향교 명륜당 내에 사무소를 두었다. 향약원은 익산향교 관할 지역 거주 유림들

41) 1942년 4월 제15회 향약총회부터 식순이 수록되어 있는데, 식순에는 궁성요배, 목도, 황국신민 서사 제창이 포함되었다. 익산향약 총회의 식순에 위의 사항이 언제부터 포함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937년 9월 경학원은 전국 향교에 석전제를 마치고 음복례 후 중일전쟁에 참가한 일본 병사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서고식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실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總304號) 誓告式에 關한 件, 『諸關係書類』, 1937년, 益山文廟; 장순순, 앞의 논문(2020.12), 60-61쪽).

이었으며, 임원으로 약장 1인, 부약장 2인, 유사 약간 명과 익산향교 관할 각 면에 1인씩의 약정, 그리고 약간의 고문으로 구성되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익산향교에서 시행되는 석전 후 익산향교 명륜당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총회 결과는 익산향교 직원을 통해서 익산군수에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익산향약의 운영에는 총독부 관료인 익산군수의 직접적인 관여와 감독이 있었다.

익산향약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7개 절목으로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향약의 4개 절목 외에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산업장려·공공봉사·생활개선 절목이 추가되었다. 또한 향약 절목의 세부 규정은 총독부가 추진하고 있던 각종 식민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教化改善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식민지 조선인을 탄압 내지 이용하려는 내용으로, 전통적인 향약에서 크게 변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향약의 임원에는 익산향교에서 활동하는 지역 유림 가운데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편입된 인물들이 다수를 점했으며, 이들은 식민권력인 총독부의 통치 이념에 따라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익산향약은 초기에는 유림들 단체라는 성격에 걸맞게 ‘유교적 예절과 풍속의 보급’, ‘유도진흥’, ‘동양문화에 仁義禮智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講話’ 등 전통적인 ‘조선 향약의 특징을 포함한 것처럼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조선총독부가 농촌사회를 통제하고 식민지 지배체제를 안정을 위해 전개한 관제농민운동인 농촌진흥운동의 보조 수단으로 운영되었다.

일제의 중일전쟁 도발로 전시체제기에 돌입한 시기인 1937년 10월부터는 향약 총회에서라도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군위문금의 각출 납부나 익산군내 출정군인 전사자 가족 위문 가결, 시국인식에 대한 강화 등이 새롭게 합의되고 그것에 대한 실적 점검이 이루어졌다. 1940년 이후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익산향약 총회에서는 지역 유림들의 시국에 대한 인식을 점검·강화하고, 전쟁물자의 확충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유교단체로서의 익산향약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점차 후방에서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전쟁을 지원하는 銃後 단체

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특히 1941년 4월 제13회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반드시 정오 묵도를 시행할 것이 합의되었는데, 묵도와 궁성요배, 그리고 皇國臣民 誓詞의 제창이 향약 총회의 식순에 포함되어 총회 개최와 폐회에 앞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전시체제가 향약 운영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향약이 전시체제가 동안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신무장의 강화 및 후방의 안정, 그리고 황국신민화정책의 실현의 장으로서 본래의 정신을 상실한 채 식민권력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향촌사회에서 운영되었으며 양반 사족의 향촌민 통제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상호부조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했던 향약이 일제강점기에는 공공적 성격은 약화되고, 사회교화, 농촌 지역민의 일상 통제, 국가에 대한 충성, 전쟁 선전, 전쟁물자의 확충과 동원의 場으로서 그 성격이 변용되고 운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향약은 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향약에 군수나 면장 등 식민권력의 주체가 참여하여 자율성이 배제된 채, 관의 영향력 아래에서 운영되었다는 점은 일제의 향약 장려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원전류

『益山文廟鄉約關係書類』(1935년 이후, 益山文廟)

『諸關係書類』(1937년, 益山文廟)

『例規』(益山文廟)

『直員掌議名簿』(益山文廟)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 『鄉約事業補助書類』, 국가기록원 CJA0004801, 1933.

『每日申報』, 『東亞日報』, 『朝鮮中央日報(여운형)』, 『시대일보』

국사편찬위원회의 「직원록 자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반민특위조사기록」

2. 저서·논문류

〈저서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50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2001.

김영희,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식민지' 조선의 삶과 근대』, 역사비평사, 2014.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 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논문류〉

권익산, 「日帝強占期の 益山郷校 研究」, 『靑藍史學』 13, 청람사학회, 2006.

김민철, 「1930~4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지배기구 연구」, 『역사문제연구』 20호, 2008.

富永文一,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 郷約の一斑(一)」, 『朝鮮』 76, 조선총독부, 1921.

富永文一, 「往時の朝鮮に於ける自治の萌芽 郷約の一斑(三)」, 『朝鮮』 79, 조선총독부, 1921.

水野直樹, 「咸鏡北道における思想淨化工作と郷約・自衛團」, 『地域社會から見る帝國日本と植民地』, 思文閣出版, 2013.

신정희, 「日帝下 郷約을 통한 地方統治에 관한 小考」, 『西巖趙恒來教授華甲

- 紀念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斯學』 87, 대구사학회, 2007.
- 이준식, 「혁명적 농민조합 운동과 일제의 농촌통제정책: 함경북도의 관북향약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해안, 2006.
- 장순순 외 편, 『일제강점기 향교관계 목록과 주요 자료』, 도서출판 선인, 2020.
- 장순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향약정책과 關北鄉約」, 『현대유럽철학연구』 54, 한국하이데거학회, 2019.
- 장순순, 「석전의 상징성과 향교 석전의 식민지적 변용」, 『泰東古典研究』 45,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2020.
- 靑野正明, 「植民地期 朝鮮における農村再編成運動の位置付け-農村振興運動を中心に」, 『朝鮮學報』 136, 1990.
- 한미라, 「1930년대 전라남도 향약의 운영 양상과 성격변화-「鄉約事業補助事業」과 「地方改良補助關係」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지방통치와 향약정책」,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한미라,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향약 장려 정책」, 『역사와 실학』 60, 역사실학회, 2016.
- 한미라, 「1930년대 향약 단체 운영과 단체장의 성향」, 『역사민속학』 52,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 한미라, 「일제의 식민정책과 향약 인식-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5.

3. 기타

국사편찬위원회, 우리 역사넷, 농촌진흥운동(<http://contents.history.go.kr>)

The Suppression of Colonial Power and Transformation of Hyangyak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 Focusing on Iksan-Hyangyak -

Chang, Soon-Soon

| Jeonju University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Korea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how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used, transformed, and operated Hyangyak in order to control the colonial Joseon local communities, as a clue to examining the aspects of Japanese control and oppression of colonial Koreans. The following observations were made.

In September 1934, the Jeollabuk-do authorities found that the mobilization of Confucian scholars through Hyangyak would be effective on the Rural Development Movement. Therefore, all counties in Jeollabuk-do actively encouraged the organization of Hyangyak. As a result of this action, a number of Hyangyaks were organized in Jeollabuk-do, and especially Iksan-Hyangyak at Iksan-Hyanggyo, in January 1935. The main concept of the Rural Development Movement, encouraging industry(産業獎勵), public service(公共奉仕), improvement in living conditions(生活改善) were added to the traditional rules of Hyangyak, in the Rules of Iksan-Hyangyak.

The executives of Iksan-Hyangyak were the majority of those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power system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y actively cooperated in colonial policies according to the ruling ideology of colonial power. In addition, Iksan-Hyangyak was operated as a venue for strengthening the mental armament of colonial Koreans during the Wartime Period, stabilizing lives behind the frontier, and realizing imperialization policy. This suggests tha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yangyak was both distorted and transformed, not fulfilling the original traditional spirit and autonomy of Hyangyak under th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and served as a mechanism for Japanese control and oppression of colonial Koreans.

Key words: Hyangyak, Iksan-Hyanggyo, Iksan-Hyangyak, Rural Development Movemen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4일 투고되고, 2022년 12월 05일 심사 완료되어 2022년 12월 06일 게재 확정됨.